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90호(그2)

2021.7.1.(목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320호	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유예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	2
제2021-324호	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	9
제2021-325호	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	17
제2021-326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 후원방문·다단계) 방역조치 고시	37
제2021-327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	41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20호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유예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

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유예 승인('21.6.30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1일
서울특별시

1. 적용기간: ' 21. 7. 1.(목) 0시 ~ 7. 7.(수) 24시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, 이미용업, 숙박업
3. 내 용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- 경고,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5. 업종별 방역수칙

① 목욕장업

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(세신사, 이발사, 매점운영자, 관리직원 등) *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간 검사 실시(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) 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② 출입자 명부 관리 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*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* 게시 *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 ④ ‘달 목욕(정기이용권)’ 신규발급 금지 * 다만, 횡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신규발급 가능 ⑤ 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 권고) 및 안내판 게시 * 이 ·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⑥ 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 - 음로컵: 사용 금지 - 평상: 2m(최소 1m) 간격 유지 * 1인용: 2m(최소 1m) 간격 배치 * 다인용: 2m(최소 1m)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, 구분선 설치, 손소독제 의무 비치 ⑦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⑧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(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)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, 소독대장작성) ⑪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⑫ 방역관리자 지정 ⑬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⑭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*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*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)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⑮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* *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을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	①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)*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* 고령자,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(신분증 제시)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*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② 감기몸살,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(강력 권고) 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(강력 권고) * 이 ·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④ 공용물품 사용수칙 준수 ⑤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⑥ 목욕실,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⑦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⑧ 사우나 · 한증막 ·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 ⑨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⑩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⑮ 사우나 · 한증막 · 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'이용인원' 게시 및 안내 *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(최소1m)거리두기 ⑯ 샤워시설, 옷장 한 칸 띄어 사용 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⑰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⑱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⑳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	

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② 이 · 미용업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음식을 섭취 금지	■ 음식을 섭취 금지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■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-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	■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⑪ 손님 예약제 운영	
	⑫ 손님 음료 제공 금지	
추가 수칙	① 대화자제	
	■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	■ 면도나 메이크업,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,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
★ 추가 적용 수칙	■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	■ 이용인원 제한(시설신고허가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③ 숙박업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 통 수 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	■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
	⑥ 환기하기	
	■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(객실) 퇴실 후 환기	■ 객실 내 수시 환기
추 가 수 칙	⑦ 소독하기	
	■ (객실) 퇴실 후 소독 (공용공간)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 가 수 칙	①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	
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
	②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 준수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★ 추가 적용 수칙	① 행사 · 파티 등 주최 금지 *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*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③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	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· 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 금지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대화 금지 안내	▲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6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,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(제4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7월 1일 0시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24호

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, 식당·카페,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1일
서울특별시

1. 집합금지 조치

- 기 간 : 2021년 7월 1일(목) 0시 ~ 2021년 7월 7일(수) 24시, (1주)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, 홀덤펍
- 조치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2.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
- 기 간 : 2021년 7월 1일(목) 0시 ~ 2021년 7월 7일(수) 24시, (1주)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돌잔치전문점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(시설별 방역수칙¹⁾ 준수의무화) 조치

※ 2021. 7. 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경고
 -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 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1)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○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

-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*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

*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① 식당·카페 핵심 방역수칙 중 ‘22시~익일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가능’ 위반 시
- ② 집단감염(10인 이상) 발생 시 ③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

* 집합금지 기간 : 1주일

3. 영업형태 정의

○ 홀덤펍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료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○ 돌잔치전문점

-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·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「식품위생법」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,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, 호텔, 예식장,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※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」에 따름
- ※ 5인이상 사적모임,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」에 따름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1일(목) 0시부터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※ 기 시행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77호(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)는 본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고시로 대체함
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

시설별 방역수칙 (2단계)

① 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 및 제과점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 통 수 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안내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*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⑤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	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	⑦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(의무)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-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개방,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이용시간 제한 ■ 2인 이상이 커피 · 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	■ 2인 이상이 커피 · 음료류,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 권고)
	② 흡 연기, 음악소리, 테이블 이동 금지 ■ 시설 내 모든 공간 흡 연기 금지 및 안내 ■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■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	■ 시설 내 모든 공간 흡 연기 금지 ■ 테이블 간 이동 금지
추가 수칙	③ 공용집계 사용 등 ■ 공용집계 · 접시 ·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공용집계 · 접시 ·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)
	④ 기타 ■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 · 배달만 가능 ■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· 공연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(이동설치 불가)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1인 공연 즉시 마이크 캡 교체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	■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 · 배달만 이용 ■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· 공연자 마스크 착용 · 공연자는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· 노래 부르기 등 공연 간 시간간격 유지 (30분 공연 후 30분간 금지)
	⑤ 코로나 선제검사 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(의무)	■ 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이용자 선제검사(권고)

② 돌잔치전문점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 통 수 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	■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* 식사, 기념촬영(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) 시에만 잠시 미착용(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)
	④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⑤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- 개별 돌잔치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- 개별 돌잔치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
	⑥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(의무)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■ 창문, 출입문 상시 개방(권고) -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-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, 출입문 개방, 환풍기 가동 -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■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(권고) -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	
	⑦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⑧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추가 수칙	① 식사 시 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■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	■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■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
	■취폐의 경우 공용집게 · 접시 ·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■취폐의 경우 공용집게 · 접시 ·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■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	■식사 시 대화 자제
	② 만남 시	
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	■대화 시 마스크 착용
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	■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③ 시설 내 공용공간	
	■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④ 코로나 선제검사	
	■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(의무)	■집단감염(10명 이상) 발생시 이용자 선제검사(권고)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대화 금지 안내	▲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손소독제 배치	▲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앉기	
테이블 간 띄워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※ 테이블은 몇 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
◆ **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25호**

**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
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
등 방역조치 고시**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,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1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적용기간 : 2021년 7월 1일(목) 0시 ~ 2021년 7월 7일(수) 24시
2. 적용단계 :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(개편 전 2단계 기준 적용 유지)
 - ※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79호, 제2021-314호에 의한 거리두기 적용기간 및 단계는 본 조치로 대체함
3. 적용대상 :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
 -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
 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* 등
 - * ①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중 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 상 종합소매업
 - ②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(제2조 제3호)에 따른 대규모 점포(도매업 제외)
(예 : 대형마트, 특정 품목(의류·가전·가전용품·서적 등)에 특화된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공구·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)
 -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(대리점)
4. 적용내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□ 노래연습장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 별 (2단계)	① 운영시간, 이용인원 등 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■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4㎡당 1명) ■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4㎡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	■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 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허가면적 4㎡당 1명) ■ 코인노래연습장 4㎡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, 룸별 1명씩만 이용
	②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공 통 수 칙	③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** 수기명부 불가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⑥ 손씻기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소독하기(권고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
	⑧ 환기하기 ■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* (10분 이상, 대장작성) *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간 환기	
	⑨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** 손님이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종료 직후 소독	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⑪ 마이크 사용 등	
	■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추가 수칙		

□ PC방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 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■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	■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*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
	⑤ 손씻기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환기하기 ■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⑦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상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	
	■ 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 강력 권고 안내	■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
	② 공용공간	
	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서울시 강화 조치	①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	
	■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■ 좌석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(예. 앉은 시선 높이) ■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, 헤드셋, 마우스,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	■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

□ 영화관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	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 ■ 상영관·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	■ 상영관·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
	⑤ 손씻기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 하기 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	■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
	⑦ 환기하기 ■ 영화상영 또는 공연 전후 환기(대장작성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	■ 시설 내 공용공간은 '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' 적용
추가 수칙	① 상영관 외부	
	■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	■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·예매장소)에서 취식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 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
서울시 강화 조치	①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*** 예매자(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)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
	② 기타	
	■ 매표소, 매점,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*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■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	

□ 오락실 · 멀티방 등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■ 이용인원 제한 * 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	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허가신고면적 8㎡당 1명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*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	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* 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
	⑤ 손씻기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	■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 제한 적용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■ 이용인원 제한 준수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	⑦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(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, 대장작성)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- 멀티방은 퇴실 후 소독	
	⑨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서울시 강화 조치	①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	
	■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	■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1명으로 제한 권고

□ 직업훈련기관(일반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	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
	② 방역수칙 준수 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공통 수칙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 ■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 ■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⑤ 손씻기 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 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두기	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	⑦ 환기하기 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⑧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추가 수칙	■ 방역관리자 지정 · 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	① 전일제 경우 식사	
	■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 · 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	
서울시 강화 조치	② 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	①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	
	■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	

□ 직업훈련기관(기숙형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단계별 (2단계)	① 이용인원 등 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4㎡당 1명)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	①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4㎡당 1명)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,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* ①, ②안 중 선택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방역수칙 준수 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공통 수칙	③ 마스크 착용 ■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③ 마스크 착용 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음식섭취 금지 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④ 음식섭취 금지 ■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⑤ 손씻기 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⑤ 손씻기 ■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 (권고)
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-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	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	
	⑧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(시설별 차등적용)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⑨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· 운영(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) ■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(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)	
추가 수칙	① 입소자, 종사자, 방문자에 대한 권고조치	
	■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 안내	■ 입소자 외출 및 층간 이동 자제
	■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 안내	■ 방문자 시설 출입 자제
	② 샤워실, 탈의실이 있는 경우	
	■ 공용공간 수칙 적용	
	- 숙박시설 운영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	- 숙박시설 이용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, 이용 가능
	① 입소자 (공동) 외출 자제, 매일 발열체크,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- (입소前) 2주간 예방격리 권고,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- (입소後)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: 기숙사 밀도 조정(1인실 권고),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· 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, 층간 이동 자제, 공용 공간(샤워실 · 화장실 등) 소독 강화 -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(공동) 입소자와 동선 분리, 매일 발열체크,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: 시설 출입 금지 원칙,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, 방역수칙 준수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서울시 강화 조치	①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허용 *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확인)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- 예외적으로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정확히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② 기타	
	■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	

□ 백화점 · 대형마트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환기하기	
	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,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소독하기 ■ 일 3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드) 등	
	⑦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추가 수칙	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시식 · 시음 · 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■ 시식 · 시음 · 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	■ 시식 · 시음 · 견본품 서비스 사용금지
	③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하지 않기 ■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	■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, 의자) 이용금지
	④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■ 식당,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방역 수칙 적용	■ 식당, 카페 등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

□ 백화점 · 대형마트 이외 대형유통시설 (3,000㎡ 이상 규모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마스크 착용	
	■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	
	■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환기하기	
	■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- 창문, 출입문 등 상시 개방(권고)	
서울시 강화 조치	⑥ 소독하기	
	■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드) 등	
	⑦ 기타	
서울시 강화 조치	■방역관리자 지정 ■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① 기타(2단계시 적용사항)	
서울시 강화 조치	■식약처 서비스 운영 금지	■식약처 서비스 사용 금지

□ 콜센터

구분	방역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 · 방문자 수칙
공통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(의무) ■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 · 용역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■ 증상확인 협조,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
	③ 방문자(근무자 외) 출입자명부 작성 · 관리	■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
	④ 마스크 착용(의무)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섭취 자제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의무)	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- 조별 식사시간 준수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
	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	
	■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■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	
	■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
	■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
	■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■ 근로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 ■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-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(운영대장 작성) *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*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	

구분	방역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 · 방문자 수칙
	⑧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(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)하고 자연환기 병행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■ 회의,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
	⑨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,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■ 개인별 사무공간(책상 등)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■ 공용물품(전화기, 헤드셋, 마이크 등) 소독 후 사용하기
	⑩ 기타(의무)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· 운영 ■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 ■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차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	■ 증상확인 협조 ■ 증상 있을 경우,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차제
	⑪ 근무형태	
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■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,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	■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 ■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
추가수칙	⑫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출장, 행사	
	■ 출장 최소화,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실시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안내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	■ 출장 최소화 하기,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,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(영상)으로 참여 ■ 대면으로 회의, 워크숍, 교육,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(마스크착용, 손 위생, 거리유지 등) 준수 ■ 사업장 내 모임, 회식 자제
	⑬ 구내식당, 통근버스, 기숙사, 시설내 공용공간 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	■ 해당 방역수칙 준수

구분	방역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종사자(근로자) · 방문자 수칙
서울시 강화 조치	① 기타(2단계시 적용사항)	
	■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2 권고 ■ 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권고(일 1회 이상 의무) ■ 근로자 간 칸막이는 90cm 높이 이상 설치 ■ 휴게실,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제한 권고 ■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권고 ■ 환기(매 2시간), 소독(물품 등 일 2회, 전체사업장 주1회 이상) 실시 권고	

□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렉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토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 창구	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4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－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* 및 시설폐쇄 명령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1일 0시 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(노래연습장 02-2133-5238, PC방·오락실 02-2133-5242, 영화관·멀티방 02-2133-5236, 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, 콜센터 02-2133-5243),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3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26호

**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
특수판매업체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 방역조치 고시**

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(집합제한 조치)를 1주간 연장함에 따라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1년 7월 1일
서울특별시

1.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

- 대 상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2021년 7월 1일(목) 0시 ~ 2021년 7월 7일(수) 24시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(방역수칙) 조치

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모더나)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(얀센)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 통 수 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-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④ 마스크 착용	
	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	
	■ 음식물 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물 섭취, 노래부르기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
	⑥ 손씻기	
	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	
	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	
	⑧ 환기하기	
	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	
	■ 일 1회 이상 소독 -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⑪ 시설 내 공용 장소	
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추가 적용 수칙	○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8㎡당 1명)	○ (이용자) -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 -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 8㎡당 1명)

<시설내 공용공간 수칙>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▶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▶ 대화 금지 안내	▶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▶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▶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▶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▶ 손소독제 배치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▶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의2호~4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부과사유 :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(코로나19 등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의무부과

다.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라. 부과대상 :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(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)

마. 부과금액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(1차), 300만원(2차) 부과
-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바. 효력발생일 : 2021. 6. 14.(월) 0시 부터

사. 불복절차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.

○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고발조치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27호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

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' 21.7.7.(목)까지 유지하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의2호, 제49조제3항,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)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7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기 간 : 2021년 7월 1일(목) 0시~2021년 7월 7일(수) 24시
2. 고시대상 :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)
3. 고시내용
 - 1) 기본방역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■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④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상시 마스크 착용 예외사항은 불임 종교 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참조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⑤ 음식섭취 금지 ■ 음식 제공 금지 및 섭취 금지 안내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	■ 음식 섭취 금지 * 단 물,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
	⑥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■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■ 정규예배·미사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유지 -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	■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- 수칙 준수하여 참여
	⑧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종교행사 전/후 반드시 환기 -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	
	⑨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- 종교행사 전/후 반드시 소독 - 소독대장 작성 * 공용책자,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	
	⑩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	
	① 비밀발생(침 튀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) 금지 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	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(독창 제외) 금지
	②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	■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
추가 수칙	③ 시설 내 공용 장소 ■ 휴게실, 텀비실,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

2) 추가적용수칙

- 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 * 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 *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<추가 적용 수칙>

★ 추가 적용 수칙

-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 -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
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 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
 숙박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
 음식 제공 금지

- (이용자)
 -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 가능
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
 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

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
 숙박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
 음식 섭취 금지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-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관리자·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○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,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
5. 법적근거(처분근거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
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3항
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7월 1일 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○ 담당자 :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(02-2133-2522)

○ 담당자 :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(02-2133-2532)

붙임 :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 1부.

붙임

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FAQ

- ※ 2021.7.1.부터 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- * 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*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Q1.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?

-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

Q2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?

-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(종교인, 종교단체 등)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 활동 일체를 말함
- * 예배(주일 예배, 수요 예배, 새벽 예배 등), 미사(주일미사, 새벽미사 등), 법회(초하루법회 등), 예회(아침좌선, 월초기도 등), 시일식 등 종교활동
 - 거리두기 2단계와 1.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(예, 통성기도 등) 및 성가대 운영* 및 모임도 금지
 - *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,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

Q3. 거리두기 2단계, 1.5단계 종교활동(미사·법회·예배·시일식 등)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?

-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
- 종교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, 개별 공간(예, 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
- ▲ (거리두기 2단계)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 이내 참여
 -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,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
- ▲ (거리두기 1.5단계) 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
 -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,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

Q4.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가능한지?

-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
 -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

Q5. 수련원, 기도원,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?

- 기도원 수련원,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, 특히, 숙박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
- 따라서,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(Q3 참고)
- 단,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숙박,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,
 -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

Q6.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?

-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 - 단, ①예방접종자인(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) 설교자가 ②설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시에 한해 ③가림막(아크릴판) 설치 및 ④설교자와 신도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하며(4가지 요건 모두 충족),

- ▶ 예방접종자 :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▶ 예방접종 완료자 :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※ 설교자를 제외한 사회자(진행자), 인도자, 참석 신도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설교자도 설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

※ 가림막은 설교자 신장이상 높이로 정면과 양옆 3면이상 설치하여야 함

－ 방송법,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(지상파, 케이블, IPTV 등)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도 “방송 출연”에 해당하여 설교자(강론, 법문, 설교 등)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

▶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(유튜브 등)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, “방송출연” 적용은 곤란함

▶ 단, 사적 공간(별도의 분리된 공간)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

※ ‘마스크 착용’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Q7.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(연합단체)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?

- 종교시설의 재정(회계),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
- －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, 주기적 환기소독, 음식섭취 금지,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,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·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

Q8.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(장소)을 빌려서 행사(결혼식, 장례식 등)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?

-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·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, 결혼식은 ‘결혼식장’, 장례식은 ‘장례식장’, 공연은 ‘공연장’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
- *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‘식당’ 방역수칙 적용

Q9. 종교시설 내 관리자·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?

- 종교시설의 책임자·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
 - 단, 교인,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

Q10.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?

-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

Q11.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?

-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
 - 이 경우,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,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
 * 다만, 시민단체·법인·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,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